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8월 28일, 주호영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6년 8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 9.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9. 1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주호영의원)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가입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외국인이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 연금을 수급해 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급증세를 보였음. 올 상반기(1-6월) 신청 건수도 994건에 달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가입 개월이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수급자의 수도 2021년 15건에서 2026년 상반기 60명으로 늘어났으며(8배 증가), 출국 등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외국인들이 국내에 재입국한 다음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숫자도 2021년 104건에서 2016년 상반기 520건까지 치솟았음(10배 증가).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우리 국민 가운데 연금수급권을 얻기 어려운 국민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인데, 이것이 외국인의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등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전면 제한하려는 것으로, 소득의 불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취약계층이 자신의 가입이력을 사후적으로 보충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제고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가 외국인 가입자등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모든 외국인 가입자등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가 제한될 경우에는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에 상응하는 가입이력 보충 지원제도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으므로, 외국의 공적연금제도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는 대한민국의 노후생활 안정성에 미칠 영향과 국제적 상호주의 원칙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아울러 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수급자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인데, ‘이 법 시행 전에 외국인 가입자등이 되었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이 적용될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한 외국인 가입자 등의 적용관계를 개편하여야 할 필요성, 상호주의와 그 밖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로 외국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와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상호주의와 체류자격, 국내 거주 기간 및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각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